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25
----------	-------

발의연월일 : 2026. 3. 17.

발 의 자 : 박균택 · 박정현 · 김주영
양부남 · 김종민 · 김동아
박지원 · 박 정 · 박홍배
허 영 · 황명선 · 한민수
이건태 · 이성윤 · 오세희
의원(15인)

제안이유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체계적 대응과 효과적 예방을 위해 2020년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였고, 현재는 국제법무업무를 수행하는 3개 과를 포함한 국제법무국 체제로 최근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 엘리엇 등을 상대로 하는 ISDS 사건에서 연이어 승소하는 등 천문학적 규모의 국부 유출을 방어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ISDS 중재의향서가 접수된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근래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 간 분쟁까지 ISDS를 통해 우회적으로 해결하려는 추세가 관찰되고 있음. 아울러 공세의 양상도 입법·행정·사법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제투자분쟁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정부 간 협력 의무와 절차,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을 법률로 규정하여 관련 기관 간의 혼선을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ISDS 예방 및 대응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분쟁의 사전 방지 및 승소 가능성을 제고하여 국익을 최대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국제투자분쟁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과 관련 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함(안 제1조).

나. 법무부장관이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투자분쟁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제투자중재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무부장관이 국제투자분쟁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제7조).

라.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에 관한 정부 간 협력과 예방 및 대응체계를 총괄하며, 국제투자분쟁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조직인 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을 규정함(안 제8조).

마. 법무부장관 또는 처분청의 장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수집, 정보 공유 및 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16조).

사.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 관련 사실 및 분쟁해결절차 개시 사실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과 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장이 상호 통보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법무부장관이 국제투자분쟁 발생가능성을 관리하고, 예방 관련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국제투자분쟁 관련 예산의 원활한 편성 및 집행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처분청에게는 국제투자분쟁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의무를 지도록 함(안 제20조).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투자분쟁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투자분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약·계약 등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발생하는 투자 관련 분쟁(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한 불복 및 판정의 집행 등 제반 절차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자유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약
 - 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유관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간의 계약
 - 다.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유관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간의 양해각서
 - 라. 그 밖에 명칭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유관기관이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일체의 합의

2. “분쟁해결절차”란 중재의향서 접수 등 국제투자분쟁의 통보에서부터 종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진행되는 절차를 말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나. 대통령 소속기관 및 보좌기관

다. 국무총리 소속기관 및 보좌기관

라. 지방자치단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를 포함한다)

마.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4. “유관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다.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

라. 국제투자분쟁의 상대방이 국가행위의 귀속을 주장하는 법인·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

5. “분쟁관계기관”이란 제8조제2항에 따른 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의 단장이 국제투자분쟁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해 지정하는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을 말한다.

6. “처분청(처분소관기관)”이란 제5호에 따른 분쟁관계기관 중 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의 단장이 국제투자분쟁의 원인이 되는 처분등을 소관하는 것으로 인정해 지정하는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을 말한다.
 7. “중재판정부”란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기 위하여 해당 국제투자분쟁에 적용되는 조약 또는 중재규칙 등에 따라 단독중재인 또는 여러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을 말한다.
 8. “국제투자중재시설”이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분쟁해결시설로서, 국제투자분쟁 해결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고 중재 심리 장소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제기구 및 국제중재기구(지역 사무소를 포함한다) 또는 그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제투자분쟁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장 계획 수립 및 인력 양성

- 제4조(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국제투자분쟁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 고충 관리 및 국제투자분쟁 위험 요소의 조기식별에 관한 사항
2. 국제투자중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제투자분쟁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제투자분쟁 관련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체계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입법부·사법부의 행정사무 처리기관에게 자료 제출 및 예산 편성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협조 요청의 범위 및 방법, 기본계획의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국제투자중재시설의 설치 등) 국제투자중재시설의 유치 등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에 관해서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제6조(국제투자분쟁 전문인력 양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제투자분쟁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교육시설, 교육요원의 확보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교,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제투자분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국제투자분쟁 전문 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원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재정 지원) 국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국제투자중재시설의 유치 등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하는 사업

2. 제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국제투자분쟁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하는 사업

제2장 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체계

제8조(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의 구성 및 기능) ① 법무부장관은 국제투자분쟁에 관한 정부 간 협력과 예방 및 대응체계를 총괄하며, 국제투자분쟁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조직인 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이하 “대응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대응단은 단장,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하며, 대응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③ 대응단의 상임단원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무조정실
2. 기획예산처
3. 재정경제부
4. 외교부
5. 법무부
6. 산업통상부

④ 대응단의 비상임단원은 분쟁관계기관(제3항 각 호의 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 중에

서 해당 분쟁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단장은 대응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⑥ 대응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지침 수립에 관한 업무
2.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의 검토 및 예방에 관한 업무
3. 국제투자분쟁 사건 대응 전략의 수립에 관한 업무
4.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를 수행하는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의 선정 및 지휘·감독에 관한 업무
5. 처분청(처분소관기관)의 국제투자분쟁 대응 예산 및 배상금 등 편성과, 예산 집행 협조에 관한 업무
6. 대리인 선임 비용 및 그 밖에 국제투자분쟁 대응을 위해 소요된 비용에 대한 적정성 심사와, 관련 비용 집행 기준 마련에 관한 업무
7. 분쟁관계기관에 대한 국제투자분쟁 관련 사실관계 검토, 의견 및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업무
8.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동향, 행정처분, 음부즈만 사례 등 자료·정보의 조사·수집 및 검토에 관한 업무
9. 국제투자분쟁 관련 예방 교육 및 법률자문에 관한 업무
10. 국제투자분쟁 발생 시 외국인 투자자와의 협상, 합의 및 조정 절차 대응 관련 업무

11.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국제투자분쟁 예방 관련 준수사항의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단장은 국제투자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10조에 따른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대응단의 회의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결격사유) 유관기관의 소속 임직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응단의 비상임단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자문위원) ① 단장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법적 조언과 자문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 제도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11조(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 ① 법무부장관 또는 처분청(처분소관기관)의 장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이하 “관계부처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국제투자분쟁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국제투자분쟁 관련 협력체제를 긴밀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이 관계부처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관계부처회의는 의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계부처회의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부처회의를 소집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다)이 된다.

③ 관계부처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의 차관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예산처
2. 재정경제부
3. 외교부
4. 법무부
5. 산업통상부
6. 그 밖의 분쟁관계기관인 행정기관

④ 관계부처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관계부처회의를 소집하는 관계부처회의의 의장은 국제투자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10조에 따른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관계부처회의의 기능) ① 관계부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 투자자와의 협상 시 합의안 평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국제투자분쟁과 관련된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배상금 편성 주체 결정에 관한 사항
3.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 예산의 편성 주체 결정 및 예산 협조에 관한 사항
4. 국제투자분쟁 관련하여 분쟁관계기관 간 이견이 있거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항
5. 국제투자분쟁 발생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한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간 협의 및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대응단에서 관계부처 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중요 사항

② 제11조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부처회의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척 및 회피) ① 관계부처회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국제투자분쟁의 대상이 되는 투자의 투자자이거나 해당 투자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
2. 국제투자분쟁의 대상이 되는 투자의 투자자이거나 해당 투자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과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관계부처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② 관계부처회의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관계부처회의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비밀의 유지)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은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 협력

제15조(국제투자분쟁 관련 업무 협력) ① 법무부장관은 국제투자분쟁 관련 예방·대응, 연구 및 조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인력 파견 및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 등) ①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수집, 정보 공유 및 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② 단장은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국제투자분쟁과 관련된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중재판정부의 명령 이행 등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보존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단장의 자료보존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은 국제투자분쟁과 관련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에 따라 단장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해야 하며, 협력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근거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단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 통보) ①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단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이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협정 또는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이 외국인 투자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분쟁해결절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거나 이미 시행된 법령, 행정처분, 그 밖의 정책이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외국인 투자자가 법령, 행정처분, 그 밖의 정책에 대해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 또는 국제투자분쟁의 제기 가능성을 언급하는 경우
5. 외국인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국제투자분쟁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단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8조(분쟁해결절차 개시 사실 통보) ① 국제투자분쟁 상대방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에 따른 분쟁해결절차 개시 의사를 통보받은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단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분쟁해결절차 개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분쟁관계기관을 지정하고, 분쟁관계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분쟁관계기관으로 지정된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9조(국제투자분쟁 예방 이행점검) ① 법무부장관은 행정기관 및 유

관기관의 국제투자분쟁 발생가능성을 관리하고, 예방 관련 준수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예산 편성 및 집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본 법에 따른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예산이 원활히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분청(처분소관기관)은 법률비용, 중재행정비용 및 기타 대응단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등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된 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 대하여도 이 법

을 적용한다.